

NEWS LETTER

2018년 12월 31일 Vol. 331

불기 2562년 법산 스님 초청 송년법회 봉행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12월 27일 연말을 맞아 본원 5층 대강당에서 법산 스님을 모시고 송년법회를 봉행했다.

법산 스님의 기도와 법문으로 봉행 된 이날 법회에는 400여 명의 교직원과 환우가 참석했으며, 지난 한 해 각자 맡은 분야의 업적을 자축하며 밝아오는 새해에도 병원의 발전과 행운이 함께하길 축원했다.

법산 스님은 이날 법어를 통해 화합을 강조하며 “찰떡같이 행복하게, 콩떡같이 고소하게 함께 어우러져 스스로를 비우고 우리 모두 화합하는 의료원이 되자.”라고, 전했다. 이어, “환자를 진료하는 데 있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이웃과 사회와 모든 사람에게 미소를 주는 병원이 되길 바라며, 한 해 동안 힘들었던 일은 잊고 더욱더 발전하는 병원이 되길 기원한다.”고 설법을 마쳤다.

한편, 이날 송년법회에서는 2018년 한해 우수신행 직원에 대해 시상하고 부상으로 해외 성지순례 여행권을 부여했다.



3주기 의료기관 인증 평가 성료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12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3주기 의료기관 인증 평가를 실시했다.

의료기관 인증평가는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위해 의료기관 운영 실태를 평가하는 제도로, 이날 조사위원들은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조직관리체계 ▲성과관리체계 등 4개 영역 510개 항목에 대해 세밀한 조사를 했다.

이와 함께, 환자 안전과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를 잘 갖추고 그에 따른 수행과 지속적인 노력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시스템 추적조사 및 개별 환자 추적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평가했다.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담당한 조사팀장은 “인증조사를 통해 직원들이 환자와 병원에 대한 열정을 갖고 서로 협력하는 문화를 보았고, 짧은 역사에 비해 환자안전 및 의료의 질 향상에 대한 체계가 빠르게 정착된 병원임을 알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조성민 병원장은 “이번 인증조사를 통해 우리 병원의 무한한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진호 의료원장, 조계종 승려복지회 승려복지제도 정책토론회 참석

동국대학교의료원 이진호 의료원장은 지난 12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된 ‘제36대 총무원 승려복지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승려복지제도에 대한 점검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스님들의 고령화 대비를 위한 종단 차원의 요양 시설 마련 등 복지 3대 요소인 주거·의료·소득 중 주거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승려복지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진호 의료원장은 ‘고령화 사회를 맞는 불교계 전략’에 대해 발표하며, △완주군 안덕마을 한의원 △힐리언스선마을 △제주힐링명상센터 등을 벤치마킹해 복지와 의료 등을 갖춘 인프라 구축을 제안했다.



일산지역 63개소 병·의원과 진료협력 협약 체결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진료협력센터는 올해 초부터 시작해 2018년 12월 10일까지 총 64개소 병·의원과 진료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의료기관 간 상호협약을 통해 ▲진료협력 ▲의료진 및 최신의학 학술정보 교류 운영 ▲의료서비스 증진을 위한 각종 협력 등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진료협력센터는 협약식을 체결한 의료기관들과 상호신뢰구축 및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환자에게 최적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스마트 Tip⁺

2018년 연말정산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정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위한 증빙서류 중 현금영수증과 관련된 내용 안내입니다.

하나.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족 모두가 회원 가입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가족 모두가 근로소득자라면 각각 가입해 개별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면 되고, 소득이 없거나 연 100만 원 이하라면 해당 가족을 부양하는 근로소득자가 합산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둘. 만 20세가 넘는 자녀가 이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나 형제, 자매가 사용한 금액도 합산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

만 20세가 넘는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만 20세는 넘지만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현금영수증 포함)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 단, 형제, 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셋.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출 증빙서류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명세서 출력 없이 연간 사용금액을 조회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에 사용금액을 기재하시면 된다. 또한,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인쇄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첨부해도 된다.